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39
----------	-----

2025. 6. 11.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2025. 5. 30. 강남구청장(재무과)

나. 상정의결

-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5. 6. 11.)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행정국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취득)임.

## 4. 세부내용

### ○ 재산의 표시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소요예산
		사유	방법				
1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공원녹지과)	취득	기부 채납	개포동 산46-16	1,781	307,579	-
				개포동 산46-40	742	128,143	-

### ○ 기부개요

- 기부목적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
- 용 도 : 공원(지목: 임야)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산46-16 등 2필지
- 소요예산 : 비예산
- 규 모 : 2,523㎡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77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서울시에서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토지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에 선정되어 2024년 12월 등산로 폭 10m, 면적 676㎡를 분할 매수 완료
- 토지분할 후 잔여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사유지 기부 추진

### ○ 추진경과

- '24.12.02. :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
- '25.05.20. :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 향후계획

- 2025년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 2025년 7월 : 소유권 이전 등기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

-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절감

- 기부사례 언론 홍보로 사회공헌을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상민)

### 가. 법적 검토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기부채납을 통해 강남구가 공유재산을 새롭게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의결에 앞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강남구의회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임.

○ 공유재산의 취득에는 매입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무상 양수, 교환, 건물 신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의 방식이 포함되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이러한 취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재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 강남구의회 의결을 통해 관리계획을 확정하도록 규정함.

○ 제출된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

례」 제11조에 따라 취득 재산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금번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약 4억 3천만 원으로 금액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총 면적이 2,523㎡로 조례상의 면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기부채납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부동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부채납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제1항의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본 건의 경우 해당 재산은 강남구의 재산증가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용도로 기부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부 조건이나 관리상 부담이 과도한 점도 발견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계획 수립 시점과 절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긴급하게 재산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번 안건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 제출된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본 기부채납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

립 요건을 충족하며, 공유재산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사료됨.

#### 나. 종합 의견

- 해당 토지는 과거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지정이 해제되었으며, 이후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음.
- 2024년에는 서울시가 등산로 조성을 위해 해당 부지 중 676㎡를 매입하였고, 잔여지에(2,523㎡)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무상 기부 의사를 밝혀 기부채납 절차가 진행 중임.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재정적 부담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확보와 도시녹지 공간의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임. 다만, 기부 이후 해당 토지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과 유지관리 대책, 필요 예산 확보 방안 등 후속계획을 병행해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본 기부채납 건은 관련 상위법령 및 조례에 모두 부합하며, 위배 소지가 없음.
- 다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내용 중에 해당 공유재산 기준가격 오류가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집행부는 해당 안건을 철회 후 올바른 기준가격을 안건으로 상정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재접수를 하여야 함. 다만, 지방의회는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상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수정·변경 또는 원안과 다른 대안 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항임.

- 추후 집행부는 자료 작성 및 제출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내부 검증 절차를 거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임.

##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 4. 20.>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 <202. 4. 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 5. 기준가격 명세
- 6. 계약방법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별표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재산에 대하여 기부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 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 다.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
  - 라.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
2.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한다.

**6.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7. 토론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539

제안연월일: 2025. 6. 11.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1. 수정이유

기제출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대상 토지(개포동 산46-16 등 2필지)의 기준가격 산정 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 오류에 따른 기준가격을 정정함. [※ 2025년 개별공시지가: 172,000원/㎡]

### 2. 수정주요내용

가. 안 2. 주요내용의 기준가격 수정

나. 안 3. 세부내용의 기준가격 수정

다. 안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금액 수정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2. 주요내용의 기준가격 수정

- 개포동 산 46-16 기준가격: 307,579천원 → 306,332천원
- 개포동 산46-40 기준가격: 128,143천원 → 127,624천원

### 안 3. 세부내용의 기준가격 수정

- 개포동 산 46-16 기준가격: 307,579천원 → 306,332천원
- 개포동 산46-40 기준가격: 128,143천원 → 127,624천원

### 안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금액 수정

- 취득 계(토지) 상반기 금액, 합계 금액: 435,722천원 → 433,956천원
- 취득 3. 기타취득(토지) 상반기 금액, 합계 금액: 435,722천원 → 433,956천원

##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단위 : m <sup>2</sup> , 천원)							(단위 : m <sup>2</sup> ,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 가격	소요 예산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 가격	소요 예산
		사유	방법							사유	방법				
1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공익취득)	취득	기부 채납	개포동 산46-16	1,781	307,579	-	1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공익취득)	취득	기부 채납	개포동 산46-16	1,781	306,332	-
				개포동 산46-40	742	128,143	-					개포동 산46-40	742	127,624	-
3. 세부내용							3. 세부내용								
<input type="checkbox"/> 재산의 표시							<input type="checkbox"/>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분		소유자	내역		비고	소재지		구분		소유자	내역		비고
	사유		방법		면적 (m <sup>2</sup> )	기준가격 (천원)				사유			방법	면적 (m <sup>2</sup> )	
개포동 산46-16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1,781	307,579		개포동 산46-16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1,781	306,332	
개포동 산46-40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742	128,143		개포동 산46-40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742	127,624	
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 <sup>2</sup> , 천원)							(단위 : m <sup>2</sup> , 천원)								
구	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비고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523	435,722			1	2,523	435,722	기부채납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2,523	435,722			1	2,523	435,722	기부채납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2,523	433,956			1	2,523	433,956	기부채납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2,523	433,956			1	2,523	433,956	기부채납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39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 출 자 : 강 남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취득)임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소요예산
		사유	방법				
1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공원녹지과)	취득	기부	개포동 산46-16	1,781	306,332	-
			채납	개포동 산46-40	742	127,624	-

### 3. 세부내용

#### 안건: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 □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 분		소유자	내 역		비고
	사유	방법		면적(㎡)	기준가격(천원)	
개포동 산46-16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1,781	306,332	
개포동 산46-40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742	127,624	

※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사업비

#### □ 기부개요

- 기부목적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
- 용 도 : 공원(지목: 임야)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산46-16 등 2필지
- 소요예산 : 비예산
- 규 모 : 2,523㎡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77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서울시에서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토지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에 선정되어 2024년 12월 등산로 폭 10m, 면적 676㎡를 분할 매수 완료
- 토지분할 후 잔여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사유지 기부 추진

## □ 추진경과

- '24.12.02. :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
- '25.05.20. :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 □ 향후계획

- 2025년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5년 7월 : 소유권 이전 등기

##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
-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절감
- 기부사례 언론 홍보로 사회공헌을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진 설명

대모산 등산로 초입부로서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산불진화장비 등 설치

## □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

### ○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1. 목 적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
2.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산46-16 등 2필지
3. 용 도 : 공원(지목: 임야)
4. 소요예산 : 비예산
5. 사업규모 : 부지면적 2,523㎡

# 공유 재산 관리 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 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 수	수량 (면적)	금 액		
취 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2,523	433,956				1	2,523	433,956	기부 채납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2,523	433,956				1	2,523	433,956	기부 채납
처 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기 타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입비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1	임야	개포동 산46-16	1,781	-	2025.07.	기부채납	
2	임야	개포동 산46-40	742	-	2025.07.	기부채납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539
------	-----

제출연월일 : 2025년 5월 30일

제 출 자 : 강 남 구 청 장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1건(취득)임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사업명 (부서명)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소요예산
		사유	방법				
1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공원녹지과)	취득	기부	개포동 산46-16	1,781	307,579	-
			채납	개포동 산46-40	742	128,143	-

### 3. 세부내용

#### 안건: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 □ 재산의 표시

소재지	구 분		소유자	내 역		비고
	사유	방법		면적(㎡)	기준가격(천원)	
개포동 산46-16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1,781	307,579	
개포동 산46-40	취득	기부채납	강호만	742	128,143	

※ 기준가격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그 외 건물은 시가표준액, 신축은 사업비

#### □ 기부개요

- 기부목적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
- 용 도 : 공원(지목: 임야)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산46-16 등 2필지
- 소요예산 : 비예산
- 규 모 : 2,523㎡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77년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장기 미집행 시설로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서울시에서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토지
-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에 선정되어 2024년 12월 등산로 폭 10m, 면적 676㎡를 분할 매수 완료
- 토지분할 후 잔여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길 바라는 목적으로 사유지 기부 추진

## □ 추진경과

- '24.12.02. : 기부채납 신청서 접수
- '25.05.20. : 2025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

## □ 향후계획

- 2025년 6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2025년 7월 : 소유권 이전 등기

## □ 기대효과

- 적극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공원 이용 만족도 제고
- 토지 기부채납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절감
- 기부사례 언론 홍보로 사회공헌을 위한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 위치도 및 현황사진



<p>사진 설명</p>	<p>대모산 등산로 초입부로서 공중화장실, 휴게공간, 산불진화장비 등 설치</p>
--------------	---

## □ 202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목록

### ○ 대모산 사유지 기부채납

1. 목 적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 및 관리
2.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산46-16 등 2필지
3. 용 도 : 공원(지목: 임야)
4. 소요예산 : 비예산
5. 사업규모 : 부지면적 2,523㎡

# 공유 재산 관리 계획

2025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 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 수	수량 (면적)	금 액		
취 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2,523	435,722				1	2,523	435,722	기부 채납
	1. 매 입	토 지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2,523	435,722				1	2,523	435,722	기부 채납
처 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매 각	토 지 건 물 기 타										
	5. 양 여	토 지 건 물 기 타										
	6. 기 타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 202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입비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1	임야	개포동 산46-16	1,781	-	2025.07.	기부채납	
2	임야	개포동 산46-40	742	-	2025.07.	기부채납	